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2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28일

발 의 자: 최진혁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이종환, 이효원,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청년 장애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귀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문화하고, 주거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 나.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창업·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 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 해를 입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 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 원, <u>창업·일자리 정보</u> 등을 제 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 ----- ----- -- <u>창업·일자리 정보, 주거</u> <u>지원 등</u> ----- ----- -----.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 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 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제2항제5호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¹⁾가 있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문의하였으나 확인결과²⁾ 기존 물량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 매입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사업추진 형태 검토 필요성]** 주택공급사업은 통상 사업추진 형태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 형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가령 전체 공급물량(모수)을 유지한 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일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지원대상을 위해 별도 물량을 매입할 경우 매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함
- 2) **[검토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결과 해당 추진사업은 기존 공급물량 활용사업으로 이에 해당규정에 따른 주택매입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